

부산광역시사하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2. 19.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4. 2. 19.
- 다. 상 정 일 자 : 2004. 2. 27.(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가.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기준을 매장(객실)면적에 따라 세분화 함.(안 별표1)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안 별표1)
-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안 제5조)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안 제8조 및 제9조)
-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음(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 제정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이의신청 및 감액조항 등 과태료 처분행위의 근거마련과 신고포상금 제도의 생활화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기정착과 자율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므로써,

- 근검절약 하고자 하는 주민정서와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관련 법령과 환경부지침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